

포천시 공고 제2026-2146호

포천(기산지구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변경),
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 일원 포천(기산지구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9.
포 천 시 장

1. 건명: 포천(기산지구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2. 사업개요
가. 위치: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 일원
나. 면적: 46,243㎡
3. 공람내용
가. 공람장소 : 포천시청 도시정책과, 일동면행정복지센터
나. 공람기간 : 2026. 7. 29. ~ 2026. 8. 12.(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)
다. 공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
4. 주민설명회 개최
가. 일시: 2026년 8월 12일(수) 14:00
나. 장소: 일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(정보화교실)
다. 내용: 사업개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 설명
5. 의견제출: 공람기간 내 의견서 서면제출
6. 공고게시
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포천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pocheon.go.kr>)
-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/>)
나. 환경영향평가법
- 포천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pocheon.go.kr>)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s://www.eiass.go.kr>)
7.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031-538-2388), 일동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구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제한내용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①	개발진흥지구	관광·휴양 개발진흥지구	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 참조	46,243	-	증)46,243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①	기산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	-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신설 - 면적 : 46,243㎡	사업대상지 주변 저수지, 골프장, 계곡 등 관광·휴양자원을 활용한 콘도미니엄 건설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 신설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①	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관광 휴양형	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-	증) 46,243	46,243	-	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결정 사유
신설	①	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46,243	사업대상지 주변 저수지, 골프장, 계곡 등 관광·휴양자원을 활용한 콘도미니엄 건설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2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획지 번호	위 치	면적(㎡)	
1	1	23,312	1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23,312	관광휴양시설용지
2-1	2	13,086	1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7,029	조성녹지
2-2			2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6,057	
3	3	9,845	1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9,845	원지형보전지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	계획 내용
1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용도	지정용도	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의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및 매점, 문화체육공간
			불허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시설
		건폐율		30%이하
		용적률		80%이하
		높 이		4층이하
		형 태		건축물의 지붕은 경관 및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되, 입면의 재질 및 형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
		배 치		채광 및 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함
		건축선		도로 경계로부터 1m
2	일동면 기산리 산142-28번지	용도	지정용도	원형녹지
			불허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시설
		건폐율		-
		용적률		-
		높 이		-
		형 태		-
		배 치		-
		건축선		-